

35번 유제1.

[×, 관할지정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다.]

85번 정답 O로 정정

203번 정답 O로 정정

158페이지 표내용 수정

◆ 구속의 집행정지 및 구속취소와의 구별

검사의 의견청취	반드시 들어야	반드시 들어야. 다만,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	반드시 들어야. 다만, 검사가 청구한 경우와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
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365번 정답 X로 변경

394번 정답 X로 변경 및 해설변경

■ 해설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에 따라 귀화허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 및 종료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, 한편 단지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되며 한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(대판 2017.4.27. 2017 도 2583). 즉,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·접수한 경우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때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.

정답 ×

469번 정답 O로 정정

539번 정답 X로 정정

578번 유제1. 정답변경 [X, 이미 유죄확정된 공범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]

772번 정답 O로 수정

820번 문제 “공판조서” 추가 [820.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~]

939번 유제1. 정답변경

[×, 항소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선해하여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.]

1064번 해설변경 (3일)삭제

■ 해설 동법 제 20 조 제 1 항, 참고로 청구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(동조 제 2 항).

정답 ○